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9. 20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9월 10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9월 10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3. 9. 20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주장우)

가. 제안이유

-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·공유재산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및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
-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 완납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하도록 하고

나. 주요골자

-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(조례 제26조)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(조례 제38조의 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(전문위원 : 심완택)

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, 대부료 납부기간의 연장 등을 개정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건전 재정의 운영을 위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